

## “노동부, 에버랜드 어용노조 직권취소해야” 금속노조, 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삼성물산 불성실 교섭 감독 촉구

금속노조가 10월 6일 오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버랜드 어용노조 즉각 직권취소와 삼성물산 불성실교섭 문제 즉각 감독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문제 해결 ▲삼성물산 불성실교섭 행태 노동부가 즉각 감독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1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 시절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인정해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이력이 있다.

안경덕 장관은 올해 5월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건에 관한 질의에 “삼성 에버랜드 부당 노동행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라고 대답하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올해 8월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헌법과 노조법상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 라고 판결했지만,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는 여전히 현장에 살아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는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에 빼앗겼던 교섭권을 2021년 올해 10년 만에 되찾았지만, 현재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 측이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은 고작 ‘생수 제공’ 뿐이다.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이 났고, 장관이 사과했음에도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그대로 두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동부가 어용노조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삼성의 눈치를 보며 집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5월 이재용이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우리는 가짜 사과라고 생각했다. 사과하고 일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며 삼성의 여전한 노조 적대행위를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뻔뻔한 교섭 태도 배경에 에버랜드 어용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8월 판결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이다” 라며 “삼성이 10년 만에 교섭하고 있지만, 삼성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라고 꼬집었다.

서범진 변호사는 “어용노조 설립 과정이 무효이고 어용노조는 이런 하자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가짜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삼성이 성실한 교섭에 임하도록 노동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 자본의 안전 무시, 노동자 또 살인

## 호성중공업 700kg 중량물 추락 중대재해 ... 안전조치 없이 크레인 작업시켜

10월 4일 경남 창원 호성중공업에 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3공장 고압전동기팀 가공반 작업장에서 700kg짜리 고압전동기 프레임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밑에서 작업하던 박 아무개 노동자가 사망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호성중공업 사망사 고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고, 사측의 노동자 살인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번 중대 재해를 호성중공업 사업주가 기본 안전조치를 무시해 벌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호성중공업은 크레인 끝에 중량물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는 갈고리 형태의 후크만 달아 작업하도록 지 시했다. 대형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옮기고, 내리는 등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작업이지만 기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호성중공업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 리는 중량물 제품에 후크나 로프를 걸기 위한 별도의 고리를 만들어 달

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알아서 제품 의 구멍 등을 찾아 불안정한 후크를 걸어야 했다. 해당 공정의 노동자들 이 다루는 제품은 매번 크기와 중량 이 달라 정확한 무게중심,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려야 하지만, 호성중공 업은 이런 기초 안전조치를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호성중공업은 크레인 작업 시 크레인 동선 출입금지 조치, 작업공간 과 크레인 동선 분리 등 기본 안전 조치를 하기는커녕 크레인으로 작업 물을 옮기는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제품을 크레인에 매단 상태에서 아래에 들어가 상태 를 살피고 조치하는 하부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호성중공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작업 시 지킬 수 없는 내용만 나열해냈 다. 작업표준에 크레인 작업반경 내 접근 통제, 중량물 하부작업을 금지 한다고 써냈지만, 노동자가 크레인 매단 제품에 붙어 수평을 맞춰가며 올리고 내리도록 지시했다.

호성중공업은 해당 작업반이 보고 한 사고 발굴제한 문서를 통해 ‘프 레임 가공작업 제품 인양 시 제품 구조상 수평 인양 어렵다’, ‘인양 후 이동 시 후크의 미끄러짐으로 제 품이 떨어질 잠재위험이 있다’ 라는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호성중공업은 언제든 사고가 날 위험한 작업임을 알고 있었지만, 비용 등을 이유로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노동자들은 위험을 알면 서도 알아서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 야 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호성중공업에 ▲호성중공업 대표 사과 ▲근본 안전 대책 즉각 마련 ▲위험작업 중단 ▲목격자·동료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시행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노동부 창원지청에 ▲호성 중공업 전체 공장 특별근로 감독 ▲호성중공업 전체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 ▲창원지청 관내 사업장 크레 인 안전점검·점검 시 노조 참여 보 장 ▲호성중공업 사업주 구속 등을 촉구했다.